

## 구급상황관리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 총 8명(별첨)

2. 근로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기 간 : 2023. 12. 20.(수) ~ 12. 21.(목) (2일간)

- 1일차 : 12. 20.(수) 14:00

- 2일차 : 12. 21.(목) 14:00

나. 장 소 : 인천소방본부 5층 119상황체험실(브리핑실)

다. 대 상 : 최종 합격자 8명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신원진술서 2부.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3. 유의사항

- 가. 최종합격자 등록 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 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및 중도 근로계약 해지 시 예비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최종합격자의 이력서 상 기재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본 채용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공무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마. 채용되지 않은 응시자 중 채용서류(원본) 제출자는 반환 청구기간 [2023.12.13.(수) ~ 2023.12.31.(일)]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passionguy90@korea.kr](mailto:passionguy90@korea.kr))으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내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제출서류 일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032-870-3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합격자 명단(별첨) 1부.
  2. 신원진술서(서식) 1부.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b>공직자</b>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b>부패행위</b>'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b>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b>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b>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b>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b>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b>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b></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